

# 심 사 보 고 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91
----------	-----

2024. 1. 30.(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월 24일

-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현재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 중에서 안전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

##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 위원회를 구성(위원 임명·위촉)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가 자동으로 해산(위원 해임·해촉)된 것으로 간주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실태를 재검토하고 통·폐합 하는 등 정비하는 것을 국정과제(120대 국정과제, 13.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로 삼고 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181개 상설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위원회,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본 조례 일괄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나. 주요내용 검토

### ○ 제1조(「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뷰티산업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2회 서면으로 개최되었고, 뷰티산업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하는 형태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었음.
- 이에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도 위원회의 역할·기능 및 운영상에 문제가 없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 제2조(「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상 또는 포상이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명 추천이 필요한 경우 심의하는 것이 주요 기능임.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상 또는 포상은 부정기적으로 필요 시 실시되고 있고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필요성이 적어 안전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 제3조(「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 금액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본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 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것보다 안전이 발생할 때 구성·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 제4조(「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도로명주소법」 제29조는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충청북도주소정보위원회의 기능을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로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도로(국도, 지방도)가 새로 만들어지면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시·군 내에 있는 도로는 시·군에서 부여를 하고,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 경우 도에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됨.
-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3년간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 경우가 없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것보다 안전이 발생할 때 구성·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제5조(「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11조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둘 것과 위원회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는 최근 3년간 2회 개최되었고,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자문하는 형태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었음.
- 이에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도 위원회의 역할·기능 및 운영상에 문제가 없고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5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관련 법 및 위원회의 역할·기능 등에 따라 설치의 필요성은 있음.
- 그러나 심의 안건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개최가 되더라도 단순 자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할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별 조례를 각각 개정하기보다 해당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

**일괄개정 대상 5개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명, 회)

연번	위원회명 (담당부서명)	위원수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		
			'21년	'22년	'23년
1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첨단바이오과)	20	1 (서면)	1 (서면)	-
2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대응총괄과)	7	1 (출석)	-	2 (출석)
3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정책기획관)	5	-	-	-
4	주소정보위원회 (토지정보과)	13	-	-	-
5	청소년육성위원회 (양성평등가족정책담당관)	11	-	1 (출석)	1 (출석)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조(「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당연직 위원</u>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③ <u>보궐위원의 임기</u>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p>
<p>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생략)</p> <p>② <u>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u></p>	<p>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lt;후단 신설&gt;</p> <p>1. ~ 3. (생략)</p> <p>④·⑤ (생략)</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안전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u>  <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u>  <u>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u>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u>  <u>한다.</u></p>	<p><u>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9조</u>  <u>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u>  <u>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u>  <u>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u>  <u>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u>  <u>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u>  <u>본다.</u></p>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 무원이 아닌 위원 <u>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 로 한다.</u></p> <p>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p> <p>1. <u>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u></p> <p>2. <u>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 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u></p> <p>3. <u>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u></p>	<p>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5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 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 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p>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u></p> <p><u>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p>	<p><u>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도 소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안건 처리 등 운영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맹은영